

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. 3. 16 선고 2021가단4456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대한민국

피 고 A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2. 3. 16.

주 문

1.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2019. 3. 29. 체결한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변경에 관한 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보험계약상 및 수익자 명의를 피고에서 소외 B으로 하는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(무변론판결)

판사 이아영

별지